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22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여성보육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여성보육과, 전화 : 02-3396-5415, FAX : 02-3396-8739, e-mail : bestkbh@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중 “3년”을 “5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위탁계약)</p> <p>①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p> <p>②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p> <p>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를 준용하며 그 밖의 수탁자의 의무, 지도 감독 등의 사항은 제20조, 제23조, 위탁의 취소는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p>	<p>제27조(위탁계약)</p> <p>①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563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 [안 제2조]
- 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안 제3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안 제4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안 제5조]
-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사업결과 보고 [안 제6~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가. (우 편)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5층 전통시장과 (예관동)
 - 나. (이메일) kyungjoo@junggu.seoul.kr
 - 다. (팩 스) 3396-8680
- ※ 문의처 : 중구 전통시장과 정경주 ☎02-3396-5045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 24조제1항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이나 그 밖의 사용자·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턴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70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가 76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63길 6-1	2022. 8. 3.	신청에 따라 퇴계로63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730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1길 25	2022. 8. 3.	신청에 따라 난계로21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난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18-1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25-30	2022. 8. 3.	신청에 따라 퇴계로20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18-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가길 26	2022. 8. 3.	신청에 따라 퇴계로20가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71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63길 6-1	2022.8.3.	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1길 25	2022.8.3.	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25-30	2022.8.3.	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가길 26	2022.8.3.	건물 철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554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현 구금고와의 약정이 2022.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금고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금고의 수 : 단수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 포함),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지정

2. 금고의 주요내용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된 업무

3. 지정방법 : 일반공개경쟁

-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 지정 대상금융기관으로 선정
- 우선지정 대상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기관과 약정체결 진행

4. 약정기간 : 2023. 1. 1. ~ 2026. 12. 31. (4년)

5. 신청자격

-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고,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으면서 중구 관내에 지점을 둔 금융기관

6. 신청절차

(1) 서류열람

- 열람기간 : 2022. 8. 8.(월) ~ 8. 19.(금)
- 열람장소 : 중구청 2층 재무과 사무실
- 비치서류 : 2019 ~ 2021년 예산서 및 결산서 등
* [중구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예산/재정 > 예산/결산/기금]에서 상시 열람 가능

(2)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8. 24.(수) ~ 8. 26.(금)
- 접수장소 : 중구청 2층 재무과 사무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금고지정 신청서, 법인 인감증명서·정관·등기부등본, 기타 중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
- 제출부수 : 각 서류당 14부(원본1, 사본13).
※ 금고지정 신청 공문제출, 제출서류 밀봉
※ 신청서 접수기한 경과 시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 접수하지 않음에 유의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배점
합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1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
6. 그 밖에 사항	2

※ 각 평가세부항목 및 배점은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참조

8. 심사방법

- 금고별 평가 결과 최고 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선정. 다만, 선순위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지정함.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음.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번호 순서와 같음.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심사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9. 약정 및 손해배상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등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중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이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 및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3. 1. 1. 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23. 1. 1. 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음.

10.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11. 기타사항

- 제안서는 우리구 금고지정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 요망.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및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 시 신청은행별 제안서 14부를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 확인서 지참.
- 접수된 제안서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중구 재무과장 등이 확인하여 봉합 날인 후 재무과 별도 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개봉함.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 재무과로 문의(☎02-3396-5032)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565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25호(1978.5.17.)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03호(2018.9.20.)로 결정(변경)된 우리 구 필동3가 26-1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의제처리를 위해 「건축법」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 2.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열람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실시계획(안)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92-5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 명 칭 : 동국대학교 로터스관 증축 공사

3) 사업시행 규모 및 면적

구 분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	사업내역	건폐율 (%)	용적률 (%)	비 고
내 용	153,698.4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 증축 공사 - 로터스관 본관 : 지하3층 지상3층, 연면적 7,977.00㎡ - 로터스관 별관 : 지하6층 지상2층, 연면적 17,063.34㎡	32.24	118.7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로부터 3년(예정)

나. 열람기간 : 2022.08.02.~2022.08.16.(14일간)

다. 열람장소 : 중구청 건축과(☎02-3396-5806)